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

신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

-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분
-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
- 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
 -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
 -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-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-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나. 등록장소 : 신덕초등학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 (행정실)
- 다. 등록기간 : 2017년 3월 7일 ~ 3월 10일까지 <u>(입후보자는 본인 직접 방문하여</u>등록) **[**09:00~16:00**]**
- 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 (학교홈페이지 게시 및 행정실 비치)
- 2. 위원선거
 - 가. 선거장소 : 신덕초등학교 다목적실
 - 나. 선거일자 : 2017년 3월 17일
 - 다.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: 2명
 - 라. 선거방법:교육과정설명회시 학부모 직접투표 선출
 - 마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17년 3월 15일 ~ 3월 16일 (행정실)

2017년 3월 6일

신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